

우선, 무보험선박에 승무중인 선원의 재해보상문제이다.

우리 선원법은 선원의 재해보상책임을 선주에게 지우고 있긴 하나, 선주는 재해보상을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으로 카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선주의 보험료 납입지체 등 보험금지급 면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원보상도 어선원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과 같이 가입대상인 경우 우선 재해보상을 행하고 사후에 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정책보험화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보험금의 직접청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책임보험인 경우에 재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는 선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해를 당한 선원이 선주의 눈치를 살필 것 없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급여 또는 일정등급 이상의 장해보상일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원법이나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해보상금을 모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원에 대해서도 재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5. 해상운송 및 관련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에 관한 연구

해사법학과 김 남 수
지도교수 정 영 석

海上運送과 海上保險은 相互 表裏關係에 있으므로 海上運送을 모르고 海上保險만을 안다는 것은 海上保險을 모르고 海上運送만을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쪽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운송인 및 해상운송 관련 사업자의 배상책임과 그와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海上運送 및 海上運送 關聯 事業者와 海上保險者は 一定한 保險料를 支拂하고 一定한 方法으로 保險보상을 하는 保險契約關係에 있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海上運送 및 關聯 事業者の 賠償責任에 따라 保險者와 海上運送 및 關聯 事業者は 求償關係에 있게 된다. 따라서 海上運送 및 關聯 事業者와 海上保險者は 相互 補完關係에 있게 된다.

保險制度에서의 保險關係 및 求償關係는, 예를 들면 海上積荷保險者인 保險者와 積荷保險

의 保險契約者이자 被保險者인 貨主가 있고 海上運送貨物에 대한 運送契約의 債務를 지는 船主가 該當船舶을 船舶保險에 加入한 경우, 海上運送人인 船主와 保險者은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保險契約關係이면서 적하의 운송 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 후 구상권을 취득한 보험자와 해당선박의 선주는 求償關係를 形成한다.

海上積荷保險의 保險契約關係인 保險者와 被保險者인 貨主 및 제3자로서 加害者인 船主 등의 關係에서 제3자가 船主인 경우에 货主는 加害者인 船主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權을 行使하거나 保險者에 대하여 保險金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는 데, 被保險者が 保險金請求權을 행사한 경우 保險金을 지급한 保險者は 加害者인 제3자에 대하여 被保險者の請求權을 代位하여 行使하는 權利를 求償權이라 하며, 保險者가 支給한 保險金을 회수하는 行爲를 求償權行使라 한다. 求償權行使 또는 被害者로부터 損害賠償請求에 대한 自衛手段 및 被害者 救濟手段으로써 海上運送 및 聯聯事業者가 해당 賠償責任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이러한 保險制度를 이용하는 海上運送 및 聯聯事業者는 事業의 영위 중 발생하는 賠償責任危險에 대한 法理的 理解와 해당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크기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保險契約의 유지를 위해서는 保險約款, 保險契約法, 再保險 등에 대한 理解와 보험시장의 구조 및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사고의 발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賠償責任이 발생하고, 해당사고에 대하여 保險補償이 될 것인지 여부가 保險約款이나 保險證券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保險條件에 따라 擔保가 배제된 경우도 있고, 契約上 혹은 法律上 擔保가 제외되거나 保險者가 면책되기도 한다. 따라서 保險制度, 海上運送制度 등 관련법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賠償責任保險制度를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危險分析을 바탕으로 적절한 賠償責任保險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賠償責任危險에 대비하고, 補償限度額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기업활동에 따른 經濟的 不確實性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6. 난파물제거협약안에 대한 해석 연구

해사법학과 정대율
지도교수 정영석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연합현장 제57조에 근거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규정 및 기준을 채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단히 노력하여 왔다.